

#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2일.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시설 위탁관리 대상 확대(안 제5조)
- 나.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재산을 일부조정(안 제22조)
- 다. 농경지 대부료 변경(안 제23조 제2항)
- 라. 생활보호대상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결정
- 마. 변상금에 대한 대부료 조정을 적용배제(안 제23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종합검토결과

- 1999.4.3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에 부합되게 하고,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,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등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**

**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부 . 끝 .